

15.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재정경제부공고제1998-201호 1998. 12. 11

개 정 취 지

조세지원제도별로 일몰조항을 설정하는 등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,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,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 요 내 용

- 가. 투자금액의 5%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 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으로 정하고, 특수관계자간 거래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제외하여 지원제도의 남용을 방지함.
- 나.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을 창업 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것으로서, 출자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것으로 정함.
- 다.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이외에 교수, 연구원 등을 추가하도록 함.
- 라.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텔레비전·라디오 방송업, 패션디자인업, 포장 및 충전업 등을 추가하도록 함

- 마.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 부채상환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재무구조개선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에 차입금의 이자 등을 추가하고 지원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양되는 모든 부동산이 포함되도록 함.
- 바.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용함에 있어서,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당해 기업이 5년이내에 부채비율을 200퍼센트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과 흑자전환 등 희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, 기업개선계획에는 부채상환,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재무구조개선계획과 보유자산 매각, 인력감축 등 자구계획을 포함하도록 함.
- 사.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손비 인정 대상 금융기관을 은행이외에도 종합금융회사, 자금중개회사, 상호신용금고, 증권회사, 보험회사 등을 추가하도록 함.
- 아. 금융기관 인가취소, 영업정지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한 경우 소득세 추징을 배제하도록 함.
- 자.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잉여식품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의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법인을 음료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함.
- 차.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적용기한이 2년으로 설정된 정부업무대행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을 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으로 정함.
- 카.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입시에 구입금액의 10%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도·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.
- 타.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취득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도록 함.
- 파. 2000년문재 해결을 위한 영향평가, 변환, 검증 및 시험운영에 필요한 외부용역비를 기술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.
- 하.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가 일반법인의 70퍼센트로 제한되는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, 정부가 20퍼센트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정부출자기관 및 상기 두 법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 정함.
- 거.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배당금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더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.